비밀유지계약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갑" 또는 "정보제공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원익아이 피에스(이하 "을" 또는 "정보수령자"라 한다)는 M-Project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M-Project(이하 "목적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 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목적이 있다.

제 2 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갑 : 삼성전자 주식회사 M-P/J 장 백홍주 상무

을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이문용

제 3 조 (비밀 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 4 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 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본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한 인원외에는 어떠한 제 3 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약서"를 제출한 "관련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정보제공자"와 제 3 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전쟁, 혁명, 정부의 규제 등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 하다.

제 6 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 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 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 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 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 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 보
-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 8 조 (보증)

-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 3 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 ①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 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i)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가 제 3 자에 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다만, 제 4 조 제 3 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 정한다.
- ③ 본 조 제 1 항의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구속력)

- ①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 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 3 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 첨부: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월 1일

"갑"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대표이사 권 오 현

11 9 11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대표이사 이 문 용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 (NDA Participant Agreement)

아래 참여자는 "본 계약"(상기 비밀유지계약서)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 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Participant Read above Non Disclosure Agreement and swear to keep it sincerely)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

No	부서명	부서장	참여자	서명	사원번호	비고
	(Department)	(Manager)	(Participant)	(Signature)	(Employee NO)	(Remark)
1	반도체 사업본부	허노현 전무	到地	A.	2100906	
2	반도체 사업본부	허노현 전무	में धरा	AM	2110701	
3	반도체 사업본부	허노현 전무	0140		2060610	
4	기술 개발 본부	박상준 전무	此处为	(3)	2060204	
5	기술 개발 본부	박상준 전무	世子子	18	20/06/0	



